

#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04.02]  
( 제정) 2024.04.02 조례 제2073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복지정책과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4554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①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보훈교육 지원은 보훈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"보훈교육"이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,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
2.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
3.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자원 및 자원 조달 방안
5.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사업)** 시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2. 파주시 관내의 보훈유적지 탐방 및 현충선양시설 봉사 프로그램 운영
3. AR/VR 등 디지털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·보급
4.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사무의 위탁)**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재정지원 등)**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9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0조(포상)** 시장은 보훈교육 및 교육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「파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부칙(2024. 4. 2. 조례 제2073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